

광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10826(본소), 2022가단5129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구상금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원 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4. F
5. G
6. H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20. 5. 8. 작성 2020년 제21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반소피고)는 2,000만 원, 원고(반소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 C은 400만 원, 원고 D, E, F, G, H는 각 2,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21카정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8. 2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원고들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반소

원고 A은 피고에게 5,122,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0. 5. 22.경부터 2021. 5. 1.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K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보험설계사(팀장)이고, 피고는 위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위 원고는 2020. 5. 8.경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 3년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5. 22.경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다. 위 원고는 2020. 5.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 제6조(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원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부 속 약 정 서

갑 : J(주) K : 피고

을 : 원고 A

1. 금전손해위험 내용과 의미

금전손해위험이라 함은 (생략) 약정인 을이 선지급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미이행 하거나 약정근무기간 이내에 퇴사(해촉)함으로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기타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갑에게 금전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약정인 을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갑의 금전손해금액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 갑이 청구한 금전손해비용 전액을 즉시 책임변제할 것임을 확약하며 동의한 다.

(4) (생략) 약정인 을이 선지급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해촉)함으로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기타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 여 갑에게 금전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약정인 을은 환수사유 발생시 반환해야 할 원금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동의한다.

6. 선지급금 약정조건

갑은 약정인 을에게 위촉계약서와 선지급금약정서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약정된 금원을 선지급하고, 약정인 을은 선지급 약정조건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종료후에도 선지급금에 대한 약정서 지급금액 및 조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한다.

(1) 선지급금액 : 금 이천만 원(₩20,000,000원정)

(2) 지급일자 : 2020. 5. 8.

(3) 지급계좌 : 은행명 - 농협 / 예금주 - A / 은행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4) 선지급금 지급조건

① 매일 오전 9시 정시 교육참석과 오후 4시 이후 귀사를 기본으로 활동을 하며, 정시교육 참석일수는 매월 85% 이상 활동일수기준을 준수한다.

단) 정시 교육참석/귀사 확인은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매월 정산을 하도록 한다.

② 위촉 후 최소한 3년 이상을 활동토록 약정하며, 약정된 위촉(약정)기간 중 인보험 월납초회료 보험료 기준 매월 50만 원 이상을 달성한다.

단) 기준업적은 인보험 15년납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실손, 자동차, 재물, 연금, 저축보험은 기준 업적 대상상품에서 제외한다.

③ 특히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생보계약은 24회, 손보계약은 13회 이내 유지율지표 달성하고, 지점장 위임자는 계보팀원의 유지 및 수수료환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단) 업적비례 추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보험미유지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환수(환수율: 위촉계약서 명시) 기준에 따라 환수에 동의한다.

④ 지점장 위임조건기준은 본인 위촉후 6개월 이내 (2020년 12월한) 본인포함, 팀원의 성과가 월평균 50만 원 달성하는 FP기준 1:5명 이상 조직구축을 하고,

(4) ③ 기준 지점(팀) 성과(월납초회료)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매월 달성하여야 한다.

단) 지점장 위임후 3개월 이상 지점장 위임기준 성과미달시는 강경조치하고 팀원은 타지점 또는 직할계보에 조직편성을 한다.

⑤ L FP 이외의 직업을 갖거나 타보험관련회사(대리점)를 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L에 위촉중인 FP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직종 또는 타보

험관련회사(대리점)로 유인을 금지하며 유인시는 선지급금에 대한 전액반납, 해촉, 손해배상청구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⑥ 사무실 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하를 초래할 있는 사조직 화, 루머조성(전달) 등의 행위에 관여할 경우, 업무방해로 인한 약정서 위반으 로 간주한다.

(5) 약정인 을은 약정서의 선지급 조건 이행에 동의하며 지급조건 미이행시 약정 서 내용에 따라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에 동의한다.

(6) 특히 공정증서는 선지급지급일 최초 1회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정증서 효력발생 및 변제기일은 선지급한 날기준 D+3개월(위촉당월계약 실효예상시점) 로 기준으로 작성하는 금전소비 대차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증에 동의한다.

(7) 본건의 약정서의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통하여 공증(보증인 1명)토 록 한다.

라.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가 2020. 5. 8. 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7. 31.,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원고 및 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20. 5. 8. 작성되었다.

마. 위 원고는 2021. 4. 30. 소외 회사에 보험설계사 해촉을 신청하여 2021. 5. 1. 해촉되었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5. 14. 사망하였다. 원고 C은 망인의 처로 상속분은 3/15이고,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A 포함)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분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23,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의 법적 성격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4)에 정해진 선지급금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선지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에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촉계약서와 선지급약정서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약정된 금원(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위 원고는 선지급 약정조건을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4)에서 ‘선지급금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5)에서 ‘위 원고는 약정서의 선지급조건 이행에 동의하며 지급조건 미이행시 약정서 내용에 따라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선지급금이 과거 일하던 회사에서 받지 못하게 된 수당을 보전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수입이 없거나 적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행에 따라 지급된 스카웃비 내지는 정착지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지급금이 오로지 그러한 명목으로만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피고로서는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를 영입하고, 그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관리하여 목표 실적을 달성케 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선지급금 지급조건을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위 원고는 1994년부터 보험설계사(팀장, 지점장)로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점의 수익구조와 보험설계사의 업무 및 수수료 지급 조건, 선지급금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선지급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A은 보험설계사 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1. 4. 30. 보험설계사 해촉을 신청하여 2021. 5. 1. 해촉되었으므로, 2021. 5. 1.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4) ②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의 강압 등으로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5 내지 23, 28 내지 35, 37 내지 4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선지급금반환채무 2,000만 원, 원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연대보증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C은 400만 원(= 2,000만 원 × 3/15), 같은 상속인인 원고 D, E, F, G, H는 각 2,666,666원(= 2,000만 원 × 2/15,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2020. 7. 31.) 이후로서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서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원고 A의 해촉일)인 202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자연손해금률(연 15%) 이내로서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서 정한 연 12%의 자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약정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5. 8.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제3조 (4)에서는 피고의 경제적 손실 등의 피고의 금전손해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의 법적 성격, 즉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즉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에 피고의 손해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지급금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 A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9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이 약관에 해당하거나 원고 A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의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이 사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업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인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4) ② 부분(근무기간, 월 실적) 및 ④ 부분은 중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해당 공란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은 M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 약정조건(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4793) 및 N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 약정조건(광주지방법원 2021나67496)과 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선지급금은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 (4) ④ 공란 부분에는 수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O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은 1,000만 원, N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은 1,000만 원, P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은 3,500만 원이고, O와 피고 사이의 선지급금 약정조건 (4) ④ 공란 부분 및 P와 피고 사이의 같은 부분에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

- ③ 설령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의 오랜 보험설계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본 제공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관(이 사건 약정서)의 사본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⑤ 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이 사건 선지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다.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하였다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4) 원고들은, 이 사건 선지급금은 정착지원금임을 전제로, 원고 A이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70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2021. 4.분 미지급 수당 및 해촉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즉 원고 A의 근무기간에 따라 이 사건 선지급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지급금에서 원고 A이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수수료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지점운영약정에 따라 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 5,122,72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반소는 본소와 상호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이 공통되거나 반소청구가 본소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법률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는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지급금 약정에 따라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지급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반소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 및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지점운영약정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이 공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반소청구가 이 사건 본소의 공격방어방법 등과 공통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